

2024년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 공고

2024년도 표준개발협력기관(COSD)의 지원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2. 16.

국토교통부장관

I

2024년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

건설관리분야 국가표준(KS)의 정비, 제·개정 등 표준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1. 지원규모

- 총 지원금 : 1억원(표준개발협력기관 사업비 : 1억원 내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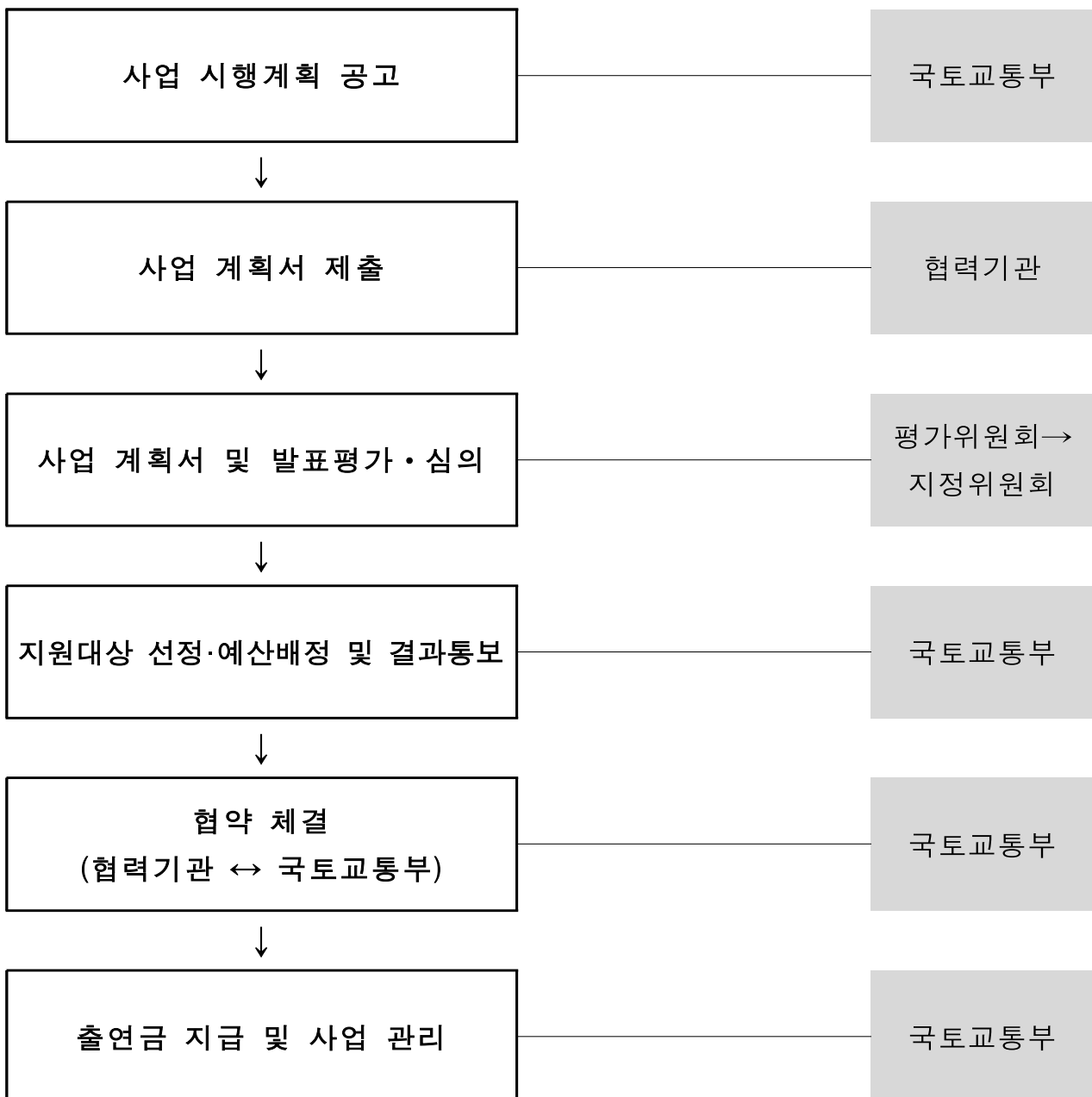
2.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

- 건설관리분야 국가표준(KS) 제·개정 및 고시 업무
- 국가표준(KS) 개발환경 고도화 및 표준 적용 확대를 위한 지원 활동
- 건설관리분야 국가표준 제·개정(안) 개발을 위한 표준화위원회 운영
- 국제표준 문서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의견 종합·정리, 국제표준 정보 수집, 국제표준(안) 제안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
- 기타 국토교통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협력기관의 업무

3. 지원내용

- 지원형태 : 정부출연
-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100% 이내 지원
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4. 12. 01.

4. 사업추진절차



5. 평가항목

○ 국가표준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배점

【 ‘24년 사업 계획 평가 : 100점 】

평가기준		배점		주요 평가사항
사업 계획	목표의 명확성	25	13	○ 사업의 최종 목표, 단계별 목표의 명확성 · 타당성 · 구체성 ○ 단계별 추진내용 · 일정의 명확성 · 타당성 · 구체성 ○ 사업기간의 적정성
	추진체계 및 표준화 전략		12	○ 사업추진 조직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○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의 적절성 ○ 국제표준 도입의 타당성 · 적절성 ○ 표준화 추진 내용 및 방안의 타당성 · 적절성
사업 능력	개발기관 전문성 및 수행능력	30	15	○ 개발기관의 건설관리 표준화 인프라(전문가, 활동실적 등), 연구경험, 전문성 등의 실질적 수준 ○ 개발기관의 국제표준화 활동 경력
	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		15	○ 주관기관, 산업계(민간)의 사업투자방안 및 지원 규모(인력 · 예산 · 시설 등) ○ 상기 지원규모 및 조달계획에 대한 적정성/실효성(현물 출자분 포함)
기술 수준	기술의 우수성/부합성	25	13	○ 자체 보유 · 축적기술의 우수성 ○ 국가표준화 대상기술과의 부합성 ○ 국가표준(안) 개발로의 연계성
	선진기술과의 비교/차별성		12	○ 선진국 기술과의 비교, 기존 기술과의 비교우위, 차별성
기대 효과	국가표준화로 연계효과	20	10	○ 국가표준화 주도 기반구축 효과
	경제적 효과		10	○ 국가표준 도입 시 건설관리산업 지원 효과 ○ 기타, 산업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
합계		100		

* 목표설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국내·외 동향 분석 등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

6. 신청자격 및 지정분야

- (신청자격) 신청서 제출일 현재 『표준개발협력기관』으로 지정된 기관
- (지정분야) 국토교통 건설관리분야
 - * 한국산업표준(KS) 분류체계의 건설분야(F)

7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산업표준화법 및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
(국토교통부 고시 2017-253호)

8. 사업계획서 제출

- 접 수
 - 접수기간 : ‘24. 02. 16.(금) ~ ‘24. 02. 23.(금)
 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 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 - *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을 기재하고 “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 재중” 문구 필히 기재 요망
 - 제출서류 : 1. 국가표준개발 사업계획서 10부.(붙임 3)
2.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 - * 기타 추가 제출서류는 국토부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
 - 접수장소 : (우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(6동 428호)

9. 유의사항

-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임
- 사업비 산정기준 및 정산은 국토교통부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또는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에 따름

- 개발사업비의 인건비 비율은 개발사업비의 50% 이내
- 개발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산업표준화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신청하여야 함
- 신청과제에 대한 민간위탁금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협력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정산을 완료한 후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

10. 지원제외대상

- 목표로 하는 표준이 국가표준 등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우
- 목표로 하는 표준이 다른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표준(안)이 있는 경우
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협약예정월을 기준으로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하는 경우(단, 접수마감일 기준 잔여 연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)

11. 문의처

-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
 - 연락처: 044) 201-4985, 4991
 - 홈페이지: <http://www.molit.go.kr>

[붙임 1].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지침

[붙임 2].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

[붙임 3]. 국가표준개발사업계획서 서식